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합526536 판결 [손해배상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주

피 고 1.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강현성

2.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안진호

변 론 종 결 2021. 10. 20.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각 33,599,5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5. 9. 9. 접수 제300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2)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같은 법원 등기계 2020. 7. 3. 접수 제211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9. 11. 접수 제1900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들과 피고 E는 모 G(2015. 4. 7. 사망)와 부 H(2020. 9. 25. 사망)의 자녀들이다.
- 나. G가 2015. 4. 7. 사망하자 H, 원고들, 피고 E는 2015. 9. 4. 망 G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 E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 다. 피고 E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근거로 2015. 9. 9.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5. 9. 9. 접수 제30002호로,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5. 9. 11. 접수 제19003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5. 7. 3. 접수 제22185호로

2020. 4.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F 주식회사 앞으로 마쳐졌다.

라. H은 2020. 9. 25. 사망하였는데, H이 사망하기 전날인 2020. 9. 24. H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피고 E 앞으로 명의이전하였고 2020. 11. 6. 위 차량을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또한 2020. 8. 4. 당시 H 명의로 개설된 부국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97,997,604원의 예수금이 있었는데 2020. 8. 5.부터 2020. 8. 15.까지 예수금 대부분이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망 모 G가 사망한 직후 피고 E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무렵 원고들이 상속인인데 상속에서 제외되어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상속회복 청구를 하는 경우,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까지 알아야 하는데, 피고 E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E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무렵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거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무효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E가 H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H 명의의 차량 및 증권계좌의 예수금 또는 주식을 처분하여 원고들이 그 상당액의 상속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E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가 H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H의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가 H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E가 G 명의의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H 명의로 이전한다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G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 명의로 마쳐진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E가 자신이 단독 상속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부 H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피고 E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1. 11. 10. 이 법원에 새로운 증거조사를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함께 제출한 문서송부촉탁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은 이른바 모색적 증거를 신청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함께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과 첨부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통해 피고 E가 H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나 피고 E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오택원, 판사 박예지

별지